

부천시·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1. 7. 4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1. 7. 4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88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(2001. 7. 12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사회복지과장 성광식)

폐지이유

- 2000. 7. 1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의료보험법이 폐지됨에 따라 시의 지역의료 보험 지원업무와 관련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주요골자

- “동 조례 폐지”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없 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 음

나. 반대토론

- 없 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-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

부천시·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

의안번호	제505호
의결년월일	2001. 7. 14 (제88회)

제출년월일 : 2001. 7. 4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폐지이유

- 2000. 7. 1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의료보험법이 폐지됨에 따라 시의 지역의료보 험 지원업무와 관련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주요골자

- “동 조례 폐지”

첨 부

- 부천시·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·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

부천시·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·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[1989. 5. 9 조례 제965호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천시·구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·구·동 및 통·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사항) ①시장(구청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동장(동출장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.

- 1. 동 사무실 내에 의료보험조합지소(이하 "지소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지원
- 2. 보험료 산정을 위한 주민의 소득·재산에 관한 지방세 과세자료 등의 제공
- 3.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득실 신고업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전·출입시 지소를 경유하도록 협조
- 4. 의료보호, 부조대상자의 변경, 군입대 및 전역, 시설 등의 수용 및 퇴소 현황의 제공

②통·반장은 보험료 고지서 배부 및 징수,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업무 등을 적극 지원한다.

③시장은 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지방세 과세자료과 보험료 산정자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민의 소득금액 또는 재산가액의 조사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④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경유방법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운영규정 제정 등) ①시장은 동 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정안을 제정하여야 한다.

- 1. 회의의 소집, 의결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
- 2. 의결사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
- 3. 협의회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
 - 가. 문서의 접수, 발송, 보관, 직인관수 등 서무는 협의회 간사가 담당
 - 나. 협의회 간사는 지소장으로 함

4.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

②동장은 의료보험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회 운영상황을 수시 지도점검하는 등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.

제4조(공부열람 등) 동장은 지소근무자가 의료보험 업무를 위해 주민등록표, 과세대장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.

제5조(시행세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 <1989. 5. 9 조례 제96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